

[별표 3] <신설 2004.1.24>

법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시험의  
일부면제자의 합격점수(제13조제3항관련)

=	전과목 응시자중 최종 순위 합격자의 전과목 평균점수	×2×	전과목 응시자의 3·4과목 평균점수	
			전과목 응시자의 1·2과목 평균점수	전과목 응시자의 3·4과목 평균점수

(합격점수 및 위 각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)